



## 진보교육감의 전교조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박주희)

□전교조의 범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1,2심 재판부 판결이 있는 후에도, 여전히 교육부와 교육청 및 전교조 간 갈등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대해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 효력 상실, 전교조 사무실 국고지원금 반환 등을 요구해왔다.

- 하지만, 지난 4월 10일 기준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는 총 16명이다. 일부 교육감들은 노조전임 허가과 휴직 허가 등의 방식 등으로 전교조의 탈법행위를 묵인·동조하고 있다.
- 전교조의 사무실 퇴거 또는 사무실 지원금 반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 공문을 여러 차례나 보냈지만, 교육청이 퇴거통보조차 하지 않거나 전교조가 퇴거통보를 무시하고 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개 교육청에 '2016~2017년도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sup>1)</sup>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7개 교육청이 전교조에 지방보조금 사업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교조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교육청	2016	2017	지원근거	사업명
강원	57,296	58,780	청소년활동 진흥법	어린이날, 학생의날 행사 운영사업 보조금
경기	0	30,000	교원단체·교원노조 보조금 지원 조례	교육활동보조사업
경남	18,900	0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
광주	40,000	40,000	교육실천사업 현장교육연구활동사업	교육실천사업
서울	0	30,000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어린이사업, 학생·청소년문화사업
인천	15,000	15,000	청소년활동 진흥법	어린이날 행사
제주	14,850	14,850	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사무실 임차료 지원
	29,000	29,000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동아리축구대회, 저소득층여름캠프, 저소득층자녀토요문화학교, 청소년동아리행사지원

1) 2014년 4월 국회가 지방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자체 및 교육청이 보조금 지출을 하려면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해졌다. 이에 각 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까지 '교원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일각에서는 이 조례가 일부 진보교육감이 범외노조 전교조의 재정지원을 돕는 우회 통로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1) 교원단체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경우

- 서울시교육청은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전교조에 2017년도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했다. 여기서 교직단체 또는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법상 교원노동조합을 의미하고, 교직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한 13개 교육청 중 10개가 모두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2015년 12월 조례에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조항을 넣더니, 2016년 12월 개정안에는 '교원과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교직단체의 정의를 수정하였다.
- 경기도교육청도 '교원단체·교원노조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전교조에 2017년도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조례에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교육기본법」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설립된 단체 및 노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기타 조례에 근거한 경우

- 강원도교육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3항2)을 근거로, 어린이날과 학생의날 행사 사업비로 전교조에 2017년도 예산 5878만 원을 편성했다. 같은 이유로 인천시교육청은 어린이날 행사를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제주도교육청도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남도교육청은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sup>3)</sup>를 근거로 2016년도에 1890만 원을 전교조에 어린이·청소년 문화행사 사업비로 지원했다.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실천사업' 공모방식으로 전교조에 2016, 2017년도 각각 예산 4000만 원을 지원·편성했다. 교육청이 낸 공모 공고에는 주요사업이 1)교육실천 연구 소모임 운영 및 교육실천 발표대회 개최 2)교육 실천 자료 제공 및 교육활동 공유라고 적혀 있다. 지원대상은 '광주시교육청 교육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단체라 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단체에 법상 단체 및 노조 뿐 아니라 '학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광주광역시 교육발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3) 단체협약에 근거한 경우

-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의해 2016, 2017년도 각각 예산 1485만 원을 편성해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는 즉시 각 지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교육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교조 본부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한 것과, 시도교육청이 단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전교조 지부에 사무실이나 임차료를 지원한 것 모두 회수·중단되어야 한다.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단체 지원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교육노조법으로 인정되는 단체·노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원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에서 퇴직교원까지 교직단체로 포함한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처럼 조례상 교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전교조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된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 또한 문제소지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실천 소모임 운영 및 발표대회 등 그 성격상 교원단체용 지원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교육실천사업'이라는 우회통로로 전교조를 지원했는데, 꼼수 지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5조(문화예술교육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

교원단체 지원 조례 및 교원단체 정의

교육청	조례명	교원단체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교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교원노동조합 2.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단체
인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단체"란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이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을 말한다.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단체"란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이하"교원노조"라 한다)을 말한다. 2. "교원단체"란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3. "교원노조"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단체"란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2. "교원노조"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단체"란 주된 사무실을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5. 그 밖에 학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광주광역시의 교육발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교육청	조례명	교원단체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울산광역시 관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한 교원단체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교원의 노동조합을 말한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단체란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2. 교원노조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4. 그 밖에 <u>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단체</u>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교원단체의 범위) "교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주된 사무실을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교직원단체의 종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